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개 별 소 비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76.4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인하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0. ~ 1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71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가스 중 부탄의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3. ----- -----. --- 2023년 4월 30일-----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생략)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4.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2023년 6월 30일-----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	5. ----- ----- ----- 가. ----- ----- ----- -----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천연가스 및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u>2022년 12월 31일</u> 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 ----- ----- -. ----- <u>2023년 6월 30일</u> ----- -----.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나. ----- ----- ----- <u>2023년 6월 30일</u> ----- -----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u>2022년 12월 31일</u> 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다. ----- ----- ----- . ----- <u>2023년 6월 30일</u> ----- ----- -.
6. (생 략) ②·③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22년</u>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 <u>2023년</u>

<u>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u>6월 30일</u> -----.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u>2022년 12월 31일</u>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 <u>2023년 6월 30일</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